

# 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모집 계획

-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,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(체험 등)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

## I. 추진방향

-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(농업법인) 또는 성공 농업(귀농)인으로부터 영농기술습득, 정착과정 상담·경영기법, 창업과정 등 연수
- 영농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
- 농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, 농산업분야 창업(일자리창출) 시,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

## II. 추진계획

- 사업기간: 2021년 4월 ~ 11월(기간 중 4개월)
- **신청기간: 2021. 4. 2.(금) ~ 4. 9.(금)**
- **신청방법: 방문접수**
- **신청장소: 서귀포농업기술센터 2층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팀**
- 사업문의: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팀, (☎760-7824)
- **모집인원: 연수생 1명**
- 신청자격
  - 농식품부 2021년도 「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」 신청자(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)
  - \*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
  - 서귀포(남원읍~서귀포시 동지역)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(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)

-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·귀촌인을 선정
-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
-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)

□ 제출서류

-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(붙임 2 서식)
- ② 보안서약서(붙임 4 서식)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(붙임 5 서식)
- ③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(최근 5년 이내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내역 및 이주 동반 가족 수를 포함)
- ④ 영농사실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
- ⑤ 귀농교육 및 영농교육 이수 확인증(교육 수료증 등)

□ 운영방법

- (필수)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
  - \* 단순노동(작업)보다는 학습지원, 기술이전, 창업역량 강화 역점 추진
- (선택)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평가회, 자율학습조직, 자가영농실습 등
- 현장실습교육 기간의 탄력적 운영: 3~7개월, 월 160시간
  - 자가영농 실습인정(월 80시간 이내): 사업담당 및 선도농가 협의
    - \* 자가영농지 실습은 매달 현장실습 총 연수시간의 50%만 인정함  
[ex. 4월 한달 동안 10일(80시간) 연수 시 자가영농실습 40시간 인정]
- 주작목+부작목 연수가능, 선도농가 및 연수생 복수지원 가능
- 잔여 실습기간을 우수 실습농가 및 차순위 실습농가에 배정 가능
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이 현장실습 가능(3명 이상 연수는 불가)
- 현장실습보고서를 월 1회 이상 e-HRD 시스템에 등록
  - \*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(불가피한 경우 수기작성 가능하나 추후 반드시 e-HRD 시스템 등록)

□ 사업대상자 선정

【연수생】

-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
  - \* 연수대상자는 선정 시 심의회에서 선정 가능
- 연수대상자 선정 시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,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(35시간 이상)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
- 연수대상자 선정은 연수시행자(선도농가)와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
-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(농업인)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
  - \*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

□ 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

- 연수생 선정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 완료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, 현장실습교육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생이 제출한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·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  - \* 『연수약정체결 및 사전설명회』 개최
-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 이행여부를 지도·감독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추진상황(결과)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, 이를 관리·비치하여야 함
-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

— < 약정의 무효·해지·변경 등 > —

- ★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 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
- ★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연수생에 대한 약정금액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·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

-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, 이때 최소 1개월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, 연수생과 선도농가 간 다시 약정체결 가능
  - 연수생 및 선도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선도농가·연수생 pool 구축 및 연수생과 선도농가에 대한 교육 등 추진
    - \* 선도농가 및 연수생 pool 구축사이트 : <http://hrd.rda.go.kr>
  - 현장실습교육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연수생에게 스마트 기기(휴대폰)을 활용한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을 사용하게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야 함
    - \* <http://hrd.rda.go.kr>
    - \*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 위주의 출석체크를 원칙으로 하며,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과 「출근부」를 병행하여 사용 가능
- 교육훈련비 지급
- 【교육훈련비】**
- (지급대상) 연수생
  - (지원금액) 월 80만원 한도(3~7개월간)
  - (지원조건) 매월 10일(1일 8시간)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, 훈련비는 연수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
    - \* 10일 미만 연수 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10일 이상 연수 시에도 연수기간에 비례하여 지급
    - \*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(8시간 기준): 4만원(교통비, 식비 포함)

※ 연수생에 대한 1일 지급단가(8시간 기준): 4만원(식비, 교통비 등)

예시 1) 4월 한 달 동안 20일(160시간) 이상 연수 시: 귀농연수생(80만원), 선도농가(40만원)

예시 2) 4월 한 달 동안 15일(120시간) 연수 시: 귀농연수생(60만원), 선도농가(30만원)

예시 3) 4월 한 달 동안 10일(80시간) 미만 연수 시: 귀농연수생(0만원), 선도농가(0만원)

○ (1일 교육시간 한도) 8시간

○ (신청방법) 연수생은 교육훈련 후 매월 단위로 출근부(사본), 입금 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교육훈련비 청구서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함

\* 최초 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수약정서도 함께 제출

○ (지급시기 및 방법)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생의 월별 현장실습 보고서 시스템 확인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교육훈련비를 연수생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

\* 출석확인인 「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」 또는 출근부(서류)를 통해 확인

□ 제재조치

○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(연수생 및 선도농가) 선발 또는 실습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습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현장실습교육 사업대상에서 제외

**【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고서식】**

**< 목 차 >**

(붙임 1) 연수생 선정기준

(붙임 2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
(붙임 3)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시스템 입력)

(붙임 4) 보안서약서

(붙임 5)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## 연수생 선정기준

| 구분                 | 평가항목   | 평가 및 배점기준   | 점수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| 100점   |   |                   |
| 신청자<br>자격<br>(35점) | ○ 신청자 연령(10)   | ○ 만 30세 이하(10), 31~40세(7), 41~50세(5), 51~60세(3), 61세 이상(1)  | ( 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본인 포함 가족수(10)<br>○ 귀농후 농촌거주기간(10)<br>○ 202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<br>지원사업 신청(5) | ○ 4명 이상(10), 3명(7), 2명(5), 1명(3)<br>○ 3~5년(10), 1~2년(7), 1년 미만(5)<br>○ 신청자(5), 미신청자(0)<br><br>※ 증빙서류 : 주민등록 관련자료(주소이력 포함) | ( )<br>( )<br>( ) |
| 귀농교육<br>(20점)      | ○ 귀농교육 이수시간(20)  | ○ 100시간 이상(20), 71~99시간(15),<br>51~70시간(10), 21~50시간(5), 20시간 이하(1)<br>* 사이버교육은 수료시간의 50%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 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| ※ 증빙서류 : 교육수료증 등  |                   |
| 사업규모<br>(10점)      | ○ 농지보유 및 임차규모(5)   | ○ 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이상(5)<br>농지 6,000㎡, 대가축 2두 미만(3)  | ( 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농업시설 및 임차규모(5)   | ○ 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이상(5)<br>하우스 등 농업시설 1,500㎡ 미만(3)<br>* 임차농지 및 시설 포함<br><br>※ 증빙서류 : 농지원부 등 관련증빙자료                      | ( )               |
| 사업계획<br>(20점)      | ○ 사업계획 수립(10)  |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 | ( 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시스템 활용의지 및 사업화<br>방안(10)   |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<br><br>※ 증빙서류 : 사업계획서, 시스템활용계획 등   | ( )               |
| 기타여건<br>(15점)      | ○ 신청자 영농 및 사업의지(10)  | ○ 우수(10), 보통(7), 미흡(5)  | ( )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<br>기여도(5)  | ○ 우수(5), 보통(3), 미흡(1)<br><br>※ 증빙서류 : 자율양식  | ( )               |

**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**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|
| 신청자                         | (성명)  | (주민등록번호)    |          |     | - |
| ①연 령(만)                     |   | ②(이주 전) 거주지 | 예) 경기 수원 |     |   |
| ③기 이수 귀농<br>교육 과정명          | 예) 농촌진흥청 제대예정군인 귀농교육('14)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 현 주소지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|   | 이메일 주소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 ④연수희망작목                     | (주작목)   | (부작목) 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 ⑤연수희망지역                     | (최우선 지역)  | (우선 지역)     | (차선 지역)  |     |   |
| ⑥연수희망기간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 ⑦자기소개 및<br>연수를 받고자<br>하는 사유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 ⑧만40세 미만의<br>경우             | 농식품부 2021 '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' 사업 신청사실 여부.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 ⑨기타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|
| ⑩추천기관<br>확인란                | (소속)  | (직위)        | 성명       | (인) |   |

본인은 2021년도 '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'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 청 일 : 2021년    월    일  
신 청 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별첨 : 작성 시 유의사항(뒷면)



##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작성요령

---

- ① 연 령(만) :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
- ② 이주 이전 거주지 :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
-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: 우선 순위 선정시,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
- ④ 연수희망작목 :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
- ⑤ 연수희망지역 :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 (희망 선도농가(농업법인) 기재 가능)
- ⑥ 연수희망기간 :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 하되,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(예시 : 3월~12월)
-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: 선도농가와 의 약정체결시 판단 근거로 활용 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(별지 사용가능)
- ⑧ 만40세 미만의 경우 농식품부 ‘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’ 사업 신청사실 여부에 반드시 체크
- ⑨ 기타 특이사항 :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
- ⑩ 추천기관 : 해당 지역 시·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 수신청서 사전 확인·보완 후 추천 가능

\*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

[붙임 3]

##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(시스템입력)

연수개요

| 센터 | 연수생 |         | 선도농가<br>성명(예상) | 현장실습기간<br>(희망기간) | 희망<br>연수작목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| 성명  | 귀농연월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|     | 2016. 3 |                | 4.1~9.30         |            |
|    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
현장실습교육 동기(목적)

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(3가지 이상)

**【농업기술, 사업화기술, 사업마인드, 관계강화 등】**

- 
- 
- 
- 

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

## 보안서약서

본인은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현장실습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, 협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2.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의 운영지침 상 지시에 따르겠습니다.
3. 농촌진흥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,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4. 현장실습교육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

위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현장실습교육에 임할 것이며, 본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서약자 :

(인)

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

